

# 외국의 흡연 그림경고 법제화 현황 및 효과

*Health Pictorial Health Warnings in Tobacco Control Policy in Selected Countries: Current Status and Effects*

서미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우리나라의 경우 담배규제정책 중 경고그림 등 담배포장지의 규제 부분은 미흡하다. 이에 본 고에서는 그림경고제도를 도입한 국가에서의 그림경고제도 도입 현황 및 그 효과를 살펴보았다. 현재 그림경고 표시 규정을 도입한 국가는 현재 13개국이며, 앞으로 그림경고 표시 규정을 실시할 예정임을 발표한 국가는 14개국이다. 이러한 그림경고를 도입한 국가에서의 그림경고는 일반시민의 지지도가 높고, 흡연의 경각심을 고취시키며, 흡연자가 금연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높여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림경고도입을 위하여 법의 개정이 필요하며, 제도의 도입에서 그림경고면적의 확대, 선명한 그림경고의 도입 및 대상별 경고그림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 1. 서론

흡연과 관련된 질병과 사망을 줄이고자 하는 국제적인 노력의 결실로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FCTC)이 2003년 5월 21일 192개 WHO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으며, 2004년 11월 29일 협약 발효의 필요조건인 40개국이 비준함으로써 2005년 2월 27일부터 발효 되었다. 각 국가로 하여금 효과적인 담배규제 조치를 수행하여 흡연율을 감소시키도록 권고하고자 마련된 담배규제기본협약에서 권고하는 금연정책은 담배 수요를 감소시키기 위한 담배가격의 인상, 담배 수요를 줄이기 위한 비가격 정책으로 경고

문구의 확대, 담배상품의 성분 등에 대한 규제, 담배의 포장 및 표기 제한, 간접흡연으로부터의 보호, 흡연 및 금연예방교육, 담배 광고·판촉 그리고 후원의 규제, 담배 중독성과 금연과 관련한 수요감소대책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이후 금연구역의 확대, 담배의 직접광고 금지, 담배가격의 지속적인 인상, 흡연자의 금연 치료를 위한 금연클리닉의 운영 등 강도 높은 금연정책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아직 경고그림 등 담배포장지의 규제 부분은 미흡하다. 이에 본 고에서는 그림경고제도를 도입한 국가에서의 그림경고제도 도입 현황 및 그 효과를 살펴 보고자 한다.

## 2. 외국의 담배 포장지 그림경고 법제화 현황

그림경고 표시 규정이 발효된 국가는 2000년 캐나다에서 담배포장지에 그림경고를 넣기 시작한 이후, 브라질, EC, 싱가포르 등 현재 13개국이며, 가장 최근인 2007년 10월에 홍콩에서 담배경고그림을 도입하였다. 담배포장지 경고그림은 담배생산품정보규제(캐나다), 유럽연합국 결정(EC), 담배규제(싱가폴), 담배광고 및 라벨에 관한 법(요르단)등 주로 담배제품의 규제법

에서 다룬다. 각 국에서는 경고그림을 담배 포장지의 양면 또는 한면의 50% 이상을 표시하도록 하였고, 각 나라별로 4~14개의 그림경고를 만들어 이를 순환하여 담배포장지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아직 담배경고그림을 도입하지는 않았으나, 향후 경고그림 표시 규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밝힌 국가는 루마니아(2008.7실행예정), 뉴질랜드(2008.2실행예정), 영국(2008.10실행예정) 등 14개국이다.<sup>1)</sup>

현재 그림경고제도를 실시하거나 향후 실시할 예정인 국가 중 캐나다, 브라질, 싱가포르, 호주

표 1. 외국의 담배경고그림 법 규제 현황 비교

국가	법	시작년도	경고그림 면적(앞/뒤)	내 용
1.캐나다	The Tobacco Products Information Regulations (SOR/2000-272)	2000.12	50% (50%/50%)	- 매 2년마다 순환:그림경고 16개 사용 - 위치: 상위 - 영어/불어 표기
2. 브라질	Anvisa Resolution - Cbr No. 104 of May 31, 2001	2002.2	(앞, 뒷면 중 한 면 100%)	2차 그림 순환 2004년: 10개 그림 경고 사용
3. EC	The European Commission's Decision 2003/641/EC	2003 (그림경고는 선택사항)	48% (43%/53%, 경계선 포함)	- 14개 그림 중 1개 표시 - 그림은 뒷면, 경고문구는 앞면에 표시 - EC데이터베이스:42개 흡연 경고그림 소장, 유럽국가들 활용
4. 싱가포르	The Smoking (Control of Advertisements and Sale of Tobacco, Labelling) Regulations 2003	2004.7	50% (50%/50%)	- 2차 그림 순환 2006년: 6개 그림 경고 사용 - 위치: 상위
5. 베네주엘라	RegulacoO de Los Empaques de Cigarrillos (담배생산물에 대한 규제, effective 27 August 1979)2004	2005.1	(한 면이 100%)	- 10개 그림경고 사용

1) 스위스, 핀란드, 노르웨이, 아이스랜드, 체코슬로바키아, 라티비아, 포르투갈, 말레이시아, 이란, 멕시코, 남아프리카임.

〈표 1〉 계속

국가	법	시작년도	경고그림 면적(앞/뒤)	내 용
6. 요르단	A new Health Ministry measure(담배 광고 및 라벨에 관한 법 : Rule 64 of August 1977, Ordinance No 1 of the Ministry of Health)2005	2005.1	60% (30%/30%)	- 1개 경고 사용 - 위치:아래(bottom)
7. 태국	Tighter Tobacco Control Regulations (18/03/2005)	2005.3	50% (50%/50%)	- 2차 그림 순환 2007년: 9개 그림 경고 사용 - 위치: 상위
8. 호주	Trade Practices (Consumer Product Information Standards) (Tobacco) Regulations 2004	2006.3	60% (30%/90%)	- 매년순환(2개 set: 각 set는 7개 그림 경고 포함) - 위치: 상위
9. 우루구아이	Presidential Decree of 20 October 2005	2006.4	50% (50%/50%)	- 8개 그림 경고 사용 - 위치: 하단
10. 칠레	law 20.105	2006.11	50% (50%/50%)	- 위치: 하단
11. 인도	The Cigarettes and Other Tobacco Products (Prohibition of advertisement and regulation of trade and commerce, production, Supply and Distribution) Act, 2003	2007.2	50% (50%/50%)	- 4개의 그림 경고 사용 - 위치: 하단
12. 벨기에	Belgian Royal Decree (August 2004)	2007.4~6	56% (48%/63%, 경계선 포함)	-14개 경고그림 사용 - 3가지 언어표기 (독어, 불어, Flemish) - 위치: 하단
13. 홍콩	Smoke(Public Health) (AMENDMENT) ORDINANCE 2006	2007.10.27	50% (50%/50%)	-매년순환(6개 메시지) -위치: 상위 -영어/중국어 표기

자료: 1) WHO Tobacco control country profiles [http://www.who.int/tobacco/global\\_data/country\\_profiles/Appendix\\_B.pdf](http://www.who.int/tobacco/global_data/country_profiles/Appendix_B.pdf)  
2) Physician's smoke-free Canada <http://www.smoke-free.ca/warnings/>

에서의 담배포장지에 도입한 경고그림의 표기 방식 및 인지도, 흡연율제고 등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캐나다<sup>2)</sup>

담배법(The Tobacco Act,1997)을 근거로 2000년 담배 생산품정보규제(The Tobacco

Products Information Regulations, SOR/2000-272를 도입하였고, 2001년부터 이 법을 실행하였다. 이 법에 따라 담배의 포장지에는 그림건강경고, 금연메시지, 독성물질 방출 및 성분 관련 설명문구의 3가지 요소를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세가지 요소의 구체적인 개발내용 및 적용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림건강경고는 주 표적집단으로 교육 수준이 낮은 집단, 청소년, 담배 중독자, 금연을 원하는 사람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집단에 적합한 맞춤형 그림건강경고를 48개 개발하였다. 개발된 그림건강경고는 3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여 매 그룹마다 2년 순환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건강경고 표시 면적은 시가, 파이프 담배, 물담배와 무연담배에는 30% 이상, 일반담배는 담배갑 포장지의 50% 이상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둘째, 금연메시지는 간결하고 명확한 최신의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행동 유도, 흡연자를 위한 정보(예, 금연메시지와 함께 금연스케 줄을 담배갑 뒷면이나 리플렛에 만들어 흡연자가 금연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를 포함하며, 흡연자들이 읽고 기억하기 쉽도록 크게 표현하며 잘 보여질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셋째, 담배의 독성물질과 성분 관련 정보를 담배포장지에 기재하여야 하는데, 이는 8개의 독성물질 중 1개 물질에 초점을 두어 분명하고 함축된 설명을 제공(예, 니코틴, 일

산화탄소, ไฮ드로젠 사이아나이드, 포름알데히드, 돌루엔, 벤진, 벤조피렌, 아세톤)하거나, 또는 물질군(니코틴, 납, 나이트로사민)별로 독성성분을 설명하여 독성물질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명하고 간결하게 표현하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담배경고문구는 인지도가 높고, 담배와 관련된 정보를 흡연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효과가 있으며, 흡연율 저하에도 효과가 있었다. 특히 성인 보다 청소년에게 좀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도에 있어서 청소년 흡연자 80%가 적어도 일주에 1회 이상 건강경고를 보거나 읽고 성인흡연자는 66% 정도가 보거나 읽었다고 응답하였다. 반면에 경고그림문구를 보거나 생각하는 것을 피한 경우는 성인흡연자의 13%, 청소년흡연자의 21%이었다.

또한 성인흡연자 10명 중 7명 이상, 청소년흡연자 10명 중 9명이 건강경고를 통해 담배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깨닫는데 효과적이라고 언급하였다. 담배포장지 뒷면의 건강정보를 읽는 빈도는 청소년 흡연자 31%가 1주일에 1회 이상, 성인흡연자의 20%가 1주일에 1회 이상 읽으며, 청소년 흡연자의 31%와 성인흡연자의 11%가 금연에 대한 정보를 기억하였다.

최종적으로 흡연율의 변화는 흡연 경고그림제 도입직전인 2000년의 흡연율은 전체 24%였으며, 15~19세 청소년들의 흡연율은 25%였으

나, 2001년 흡연율이 전체 22%, 청소년 22.5%로 하락한 이후 2006년까지 지속적으로 흡연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2) 브라질<sup>3)</sup>

브라질은 2002년 2월부터 건강그림경고를 도입하여 브라질에서 판매되는 담배의 한 면에 100% 건강경고 메시지를 표기하도록 하였다. 2002년 2월~2002년 6월의 1차시기에는 9개의 건강그림 경고 메시지를 담배갑 하단에 표기하였고, 2004년 7월에 시작된 2차시기에는 “흡연은 이러한 괴사를 일으킵니다.”, “흡연은 후두암을 일으킵니다”, “흡연할 때 쥐약이나 바퀴벌레 또는 살충제 등에 포함되어 있는 비소와 나프탈렌을 흡입하게 됩니다” 등 담배의 건강상의 폐해, 담배의 독성물질에 대한 10개의 건강그림 경고를 표기하였다.

브라질은 2001년 건강그림 경고 표기를 도입한 후 건강그림 경고 실행 전과 후의 결과를 비

교하였는데, 126개 지역의 18세 이상 2,216명에 대한 조사 결과 응답자 중 76%가 그림경고 규정에 찬성하였다. 흡연자중 73%가 그림경고를 찬성하였고, 67%는 그림이 금연하고 싶은 동기를 증가시킨다고 응답하여 찬성도와 금연유도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의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흡연자의 73%는 새로운 그림경고가 금연욕구를 증가시킨다고 응답하였고, 청소년(18~24세)의 83%는 그림경고 부착을 찬성하였다.

그림경고의 다른 긍정적인 근거로는 담배갑에 금연상담 전화번호 인쇄 후 상담전화 수가 점차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림경고 표기법을 강화한 후 상담전화 사용자 32,664명 중 92.62%가 담배갑을 통하여 상담전화 번호를 알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경고그림제도 도입 이전인 1989년 및 2000년의 성인흡연율이 각각 34.8%, 31.0%였으나, 제도 도입 이후인 2003년 성인흡연율은 22.4%로 크게 감소한 흡연율 감소효과가 있었다.

표 2. 캐나다의 성인 및 청소년의 흡연율의 변화 추이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전체	25	24	22	21	21	20	19	18
청소년(15-19세)	28	25	22.5	22	18	18	18	16

자료: Canadian Tobacco Use Monitoring Survey(1999-2006)  
Health Canada Website([http://www.hc-sc.gc.ca/hl-vs/index\\_e.html](http://www.hc-sc.gc.ca/hl-vs/index_e.html))

2) 캐나다 보건부 홈페이지:

[http://www.hc-sc.gc.ca/hl-vs/tobac-tabac/legislation/label-etiquette/index\\_e.html](http://www.hc-sc.gc.ca/hl-vs/tobac-tabac/legislation/label-etiquette/index_e.html)  
<http://laws.justice.gc.ca/en/ShowFullDoc/cr/SOR-2000-272///en>

3) Brazil, Labelling and Packaging in Brazil, 2003.

### 3) 싱가포르<sup>4)</sup>

2004년 7월부터 그림경고를 도입한 싱가포르에서 판매하는 담배는 6개의 그림경고 메시지 중 1개가 표시되어야 하며, 그림경고 메시지는 담배갑의 앞과 뒤 각각 50%를 차지해야 한다. 2006년 6개의 그림경고를 개발하였고, 2006년 10월 순환을 위해 6개의 새로운 그림경고가 개발되었다. 그림경고 전·후의 흡연율의 감소효과가 있었다. 1998년에 15.2%였던 성인흡연율(18~69세)은 경고그림이 도입된 해인 2004년 12.6%로 하락하였다.

### 4) 호주

호주는 2006년 3월부터 그림경고를 도입하여, 7개의 그림 경고가 있는 2개의 세트를 개발

하여 매년 순환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경고그림은 담배갑 앞면의 30%, 뒷면의 90%를 차지하여야 하며, 상위에 위치하도록 하였다. 호주에서는 그림경고에 금연상담안내를 한 결과 2006년 1차 그림경고 표기 후 금연 상담전화 수는 2005년 80,000통에서 2006년 165,000통으로 2배 이상 증가하여, 그림경고가 흡연자의 금연유도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5)</sup>

### 5) 영국

2008년 10월 부터 시행 예정인 영국은 Directive2001/37/EC에 따라 2006년 5~8월 동안 담배갑 그림 경고 도입이 제안되었고, The Manufacture, Presentation and Sale (Safety) (Amendment) Regulations 2007(2007.8.29 공포)<sup>6)</sup>에 의하여 공포되었다. 영국은 유럽연합

(EC)국가들 중에서 모든 담배생산품에까지 그림경고를 표기해야하는 첫 번째 국가이다. 그림경고의 형태는<sup>7)</sup> 유럽연합(EU)의 그림경고 소장(Photo Library)으로부터 선정하였으며, 두개의 그룹으로 나뉜다. 두개의 그룹 중 하나인 파트 1은 담배포장지에 게재할 14개의 그림경고를 포함하고, 파트 2는 소매 여행 판매점용 대체 그림 경고 1개를 포함하였다. 향 후 그림경고를 도입하면 현재의 문자 경고 보다(문자경고는 흡연율 0.5% 저하 기여) 흡연자들의 주의를 집중시켜 금연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sup>8)</sup>

## 3. 외국의 담배 포장지 그림경고의 효과

현재 그림경고 표시 규정을 도입한 국가는 현재 13개국이며, 앞으로 그림경고 표시 규정을 실시할 예정임을 발표한 국가는 루마니아(2008.7실행예정), 뉴질랜드(2008.2실행예정), 영국(2008.10실행예정) 등 14개국이다. 이러한 그림경고를 도입한 국가에서의 그림경고는 일반 시민의 지지도가 높고, 흡연의 경각심을 고취시키며, 흡연자가 금연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높여주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보고되었다.

#### ▶ 그림 경고 찬성도

브라질에서의 126개 지역의 18세 이상 2,2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참가자 중 76%가 그림경고 규정을 찬성하였고, 흡연자중 73%가 그림경고를 찬성하였다.<sup>9)</sup>

#### ▶ 그림경고 인지도

성인 보다 청소년에게 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캐나다의 조사결과 청소년 흡연자 80%가 적어도 일주에 1회 이상 건강경고를 보거나 읽고 성인흡연자는 66% 정도가 보거나 읽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고문구를 보거나 읽지 못한 경우는 성인흡연자의 18%, 청소년 흡연자(12~18세)의 7%에 불과하였다. 또한 경고문구를 보거나 생각하는 것을 피하는 경우는 성인흡연자 13%, 청소년 흡연자 21%이었다.<sup>10)</sup>

#### ▶ 금연 상담 증가정도

그림경고에 대한 다른 긍정적인 근거로는 흡연자의 금연상담의 증가이다. 담배갑에 금연상담 전화번호 인쇄 후 금연상담전화 수가 점차적

표 3. 브라질의 성인 흡연율의 변화 추이

	1989 <sup>1)</sup>	2000 <sup>2)</sup>	2003 <sup>1)</sup>
전체	34.8%	31.0%	22.4%
남자	43.3%	35.4%	27.1%
여자	27.0%	26.9%	18.4%

자료: 1) Population-based evidence of a strong decline in the prevalence of smokers in Brazil(1989~2003), WHO(2007)  
2) Tobacco Control Country Profiles, American Cancer Society(2003)  
<http://www.inca.gov.br/index.asp>

4) National Health Survey, 2004.

5) THE HON CHRISTOPHER PYNE MP Assistant Minister for Health and Ageing MEDIA RELEASE, Look, see, quit: new images to shock smokers, 1 March 2007.  
[http://www.health.gov.au/internet/ministers/publishing.nsf/content/86A20D286E168811CA25729000178338/\\$File/pyn016.pdf](http://www.health.gov.au/internet/ministers/publishing.nsf/content/86A20D286E168811CA25729000178338/$File/pyn016.pdf)

6) 영국보건부 홈페이지: Regulating Tobacco Products: <http://www.dh.gov.uk/en/Policyandguidance>

/Healthandsocialcaretopics/Tobacco/Tobaccogeneralinformation/DH\_4083845

7) The Tobacco Products (Manufacture, Presentation and Sale) (Safety) (Amendment) Regulations 2007 <http://www.opsi.gov.uk/si/si2007/20072473.htm>

8) The Introduction of picture warnings on tobacco packs [http://www.dh.gov.uk/en/Publicationsandstatistics/Publications/PublicationsLegislation/DH\\_077961](http://www.dh.gov.uk/en/Publicationsandstatistics/Publications/PublicationsLegislation/DH_077961)

9) Brazil, Labelling and Packaging in Brazil, 2003.

10) 캐나다 보건부 홈페이지

으로 증가하였다. 브라질에서 그림경고 표기법을 강화한 후 금연상담전화 사용자 32,664명 중 92.62%가 담배갑을 통하여 상담전화 번호를 알게 되었으며,<sup>11)</sup> 호주에서도 2006년 1차 그림경고 표기 후 금연 상담전화 수는 2005년 80,000통에서 2006년 165,000통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sup>12)</sup>

▶ 흡연정보제공정도

건강경고 정보 및 문구가 성인 보다 청소년에게 좀 더 효과적이었다. 청소년 흡연자 50%는 담배갑 건강경고 문구를 통하여 흡연의 폐해를 보거나 들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성인흡연자 10명 중 7명 이상, 청소년 흡연자 10명 중 9명이 건강경고를 통해 담배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깨닫는데 효과적이라고 언급하였다.<sup>13)</sup>

▶ 흡연율의 변화

건강경고 도입후 흡연율의 저하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의 경우 흡연 경고그림제 도입직전인 2000년의 흡연율은 전체 24%였으며, 15~19세 청소년들의 흡연율은 25%였으나, 2001년 흡연율이 전체 22%, 청소년 22.5%로 하락한 이후 2006년까지 지속적으로 흡연율

이 감소하였다.<sup>14)</sup> 2002년부터 흡연 경고그림제를 도입한 브라질의 흡연율은 제도 도입 이전인 1989년 및 2000년의 성인흡연율이 각각 34.8%, 31.0%였으나, 제도 도입 이후인 2003년 성인흡연율은 22.4%로 크게 감소하였다.<sup>15)</sup> 싱가포르의 경우 1998년에 15.2%였던 성인흡연율(18~69세)은 경고그림이 도입된 해인 2004년 12.6%로 하락하였다.<sup>16)</sup>

### 4. 우리나라에서의 담배 그림경고 도입방안

그림 경고 표시 규정이 발효된 국가는 현재 13개국이며, 앞으로 도입을 밝힌 14개국가를 포함하면 27개국이 도입을 확정하였다. 이미 담배 경고그림 제도를 도입한 국가에서 경고그림의 인지도, 담배에 대한 정보제공, 흡연자의 금연유도의 효과를 보이고 있어,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FCTC)의 2005년 2월 27일 발효와 더불어 그림 경고 표시국이 점진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도 담배규제 기본협약의 비준국으로 담배규제 기본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의 법

을 수정 보완 할 의무가 있는 국가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에서는 담배 경고문구를 담배 포장지의 앞뒷면 각각 30%를 기재하도록 하였을 뿐이라, 적극적인 경고그림의 도입을 위한 법개정이 필요하다.

그림 경고의 도입에서 이미 도입한 국가가 담배갑의 50% 이상을 유지하고 담배규제기본협약에서도 50% 이상을 권고한다. 우리나라의 조사에서도 담배경고의 면적이 클수록 흡연자의 금연의도를 더욱 강하게 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sup>17)</sup>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30%에서 50%로 경고그림의 면적을 확대하여야 한다.

또한 Christopher Pyne의 4개국(Australia, Canada, Britain and the US.)에서 수행되고 있는 흡연경고의 효과 비교결과 좀 더 크고 생생한 그림경고가 건강위험의 심각성을 알리는데 효과적이며 그 영향이 흡연자에게 광범위하게 미친다는 결과를 얻은 바, 우리나라에서도 시각적인 효과를 고려한 그림경고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대상별 효과적인 접근을 위하여 다양한 대상별 주제별 경고그림을 개발하여야 하며 이를 순환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그림 경고 개발 준비에 많은 시간이 투입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문헌

표 4. 담배규제기본협약과 우리나라의 담배경고그림 관련법 비교

담배규제기본협약	우리나라의 담배경고그림 관련법
(제11조1항나) 담배제품의 각 갑포장· 묶음포장· 기타 외부 포장 및 라벨도 담배사용의 유해성을 기술하는 건강에 관한 경고문구를 포함해야 하며 기타 적절한 전달문구를 포함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배포장지 앞뒷면에 흡연이 폐암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국민건강증진법 제8조)</li> <li>• 담배의 갑포장지에는 흡연은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표현된 경고문구 표시(담배사업법 제25조)</li> </ul>
• 경고 문구의 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흡연경고문구를 3개 이상 정하고</li> <li>• 각 경고문구는 2년씩 순환하여 표시(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2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넓은 면적, 명시성, 가시성 및 판독성</li> <li>- 사진이나 그림의 형식, 또는 이의 일부 포함이 가능</li> <li>- 원칙적으로는 주요 표시면들의 50% 이상 크기가 요구되나 적어도 반드시 주요 표시면의 30% 이상 차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기방법) 경고문구는 사각형의 선안에 한글로 "경고"라고 표시하고 이를 기재,</li> <li>• (색상) 사각형 및 경고 문구의 색상은 담배갑 포장지 등의 도안의 색상과 보색관계에 있는 색상으로서 선명하여야 한다</li> <li>• (글자체) 고딕체</li> <li>• (표기위치) 담배갑 포장지의 앞· 뒷면 하단(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별표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별표4])</li> <li>• 포장지의 앞뒷면 각각의 넓이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담배사업법시행규칙 [별표4])</li> </ul>

17) 신윤정 외, "담배포장 및 라벨 규제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11) Brazil, Labelling and Packaging in Brazil, 2003.  
 12) THE HON CHRISTOPHER PYNE MP Assistant Minister for Health and Ageing MEDIA RELEASE, Look, see, quit: new images to shock smokers, 1 March 2007.  
 13) 캐나다 보건부 홈페이지  
 14) 캐나다 보건부 홈페이지  
 15) Brazil, Labelling and Packaging in Brazil, 2003.  
 16) National Health Survey, 2004.